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 산 시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23
----------	-------

제출년월일 : 2026.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안산시 평생학습관 위탁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평생교육 강좌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사무명

-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제17조
 -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 필요성
 - 평생교육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고도화된 평생교육 강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이 필요함.

☐ 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

- 민간위탁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민간위탁 사무내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사동)
- 규 모 : 연면적 5,454.38㎡(지하1층 ~ 지상5층)

층별	용도
지하층	종합감시실, 전기실, 기계실
1층	안내실, 작은도서관, 마루실, 나는카페, 커뮤니티실, 조리실, 비품실
2층	사무실, 관장실, 대강당, 방음동아리실, 창고(2개)
3층	창작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희망장난감도서관, 컴퓨터실, 동아리실(3개)
4층	컴퓨터실, 강의실(3개), 옥상, E/V 기계실
5층	강의실(4개)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붙임 2】

☐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서 첨부

☐ **방침결정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

제11조(평생학습관의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제17조

제5조(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교육·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재위탁) ①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위탁사무명 :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평생교육사 등 전문 자격 인력을 활용하여, 직영 대비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가능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관련 조례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정기적인 지도 및 감독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 개설·운영 시 유연성을 확보하여 효율적 집행 가능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교육 전문 법인·단체의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개발 노하우를 직접 연계·활용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강좌 참여자수,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성과측정 용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전승인 검토 및 정기지도·점검 실시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평생교육법상 국민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사유로 독과점 문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없음
검토 종합 의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고도화된 평생교육 강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운영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1. 관련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

가. 관련조문

-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
-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 민간위탁금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비 고
총 소요액		1,507,674	1,538,526	1,570,011	
민간위탁금	인건비	808,742	824,917	841,415	
	운영비	230,293	235,129	240,067	
	사업비	468,639	478,480	488,529	

※ 2026년 안산시 생활임금 상승률(2%),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1%)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2027~202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3차연도 (2029년)	계
세 입		1,507,674	1,538,526	1,570,011	4,616,211
지방세수입		1,472,491	1,499,143	1,526,428	4,498,062
세외수입		35,183	39,383	43,583	118,149
세 출		1,507,674	1,538,526	1,570,011	4,616,211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1,507,674	1,538,526	1,570,011	4,616,211
재원조달		1,507,674	1,538,526	1,570,011	4,616,211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보조금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1,507,674	1,538,526	1,570,011	4,616,211
	지방세수입	1,472,491	1,499,143	1,526,428	4,498,062
	세외수입	35,183	39,383	43,583	118,149
지방채		0	0	0	0
기 금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 최근 3개년 추세 반영